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7.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8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8. 31.

다. 상정일자

-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 9. 7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소행정과장 최현우】

#### 가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 조항 및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작업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(안 제9조의2 제1항)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의 예외사유를 규정(안 제9조의2제2항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 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 조항 및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작업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(안 제9조의2 제1항)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임.
- (안 제9조의2 제2항)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 안전기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.
- 검토의견으로는  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(안 제9조의2 제1항, 제2항)을 신설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안전장치 설치, 환경미화원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내용과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
-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,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,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,

○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는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작업의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안전사고는 좋은 장비를 착용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정비와 환경미화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져 업무과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부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## 【참고자료】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☐ 폐기물관리법

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·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기준,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4. 16.]

## 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제16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(이하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·운영할 것

가.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

나.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

2. 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

3.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. 다만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가.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
나. 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
다. 폭염·강추위, 폭우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[본조신설 2019. 12. 31.]

[중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<2019. 12. 31.>]

 처음으로